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태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166

발의연월일: 2025. 3. 20.

발 의 자:김태선·김남근·박홍배

정준호 • 이학영 • 윤종군

한민수 • 박 정 • 김태년

박해철 • 맹성규 • 윤준병

이용우 · 김주영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이의신청 제도는 행정심판·행정소송과 같은 불복 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, 「행정기본법」은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마련하여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, 행정청 처리기간 및 연장기간은 각각 14일과 10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.

그런데 개별법에서는 이의신청에 해당되지만 '재심사', '재검사', '재심'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, 합리적인 사유 없이 「행정기본법」 규정과 다르게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짧게 정하거나 처리기간 · 연장기간을 길게 정하여 국민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, 처리기간 · 연장기간에 관한 규정을 생략하여 국민 혼란을

초래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습니다.

이에 개별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「행정기본법」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(안 제59조).

법률 제 호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제6항 중 "인증기관에"를 "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인증기관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8항을 제10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제6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⑧ 인증기관은 제7항에 따른 재심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⑨ 제7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에 관한 사항은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(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)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재심사에 관한 적용례)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9조(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)	제59조(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)
① ~ ⑤ (생 략)	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제3항에 따른 인증 또는 제	6
5항에 따른 인증갱신에 대한	
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	
<u>인증기관에</u> 재심사를 요청할	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
수 있다.	<u>30일 이내에 인증기관에</u>
⑦ 제6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	⑦ 제6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
을 받은 인증기관은 농림축산	을 받은 인증기관은 그 신청을
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	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농림
라 재심사 여부 및 그 결과를	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
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	따라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
	해당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
	<u>한다.</u>
<u><신 설></u>	⑧ 인증기관은 제7항에 따른
	재심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
	때에는 지체 없이 재심사를 하
	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자에게
	통보하여야 한다.
<u><신 설></u>	⑨ 제7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한
	사항 외에 재심사에 관한 사항
	은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(제2

 항 단서는 제외한다)에 따른다.

 ③ (생 략)
 ⑩ (현행 제8항과 같음)